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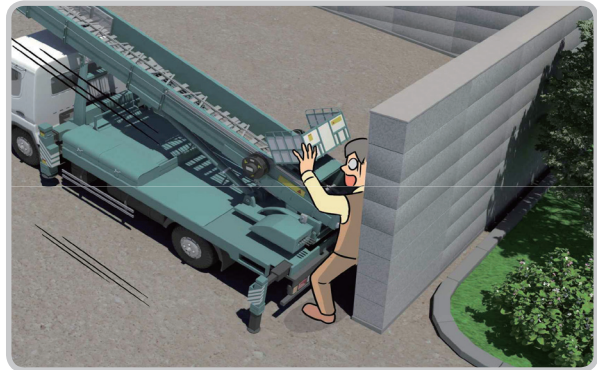
봄 이사철

『이삿짐운반용 리프트』 안전을 지킵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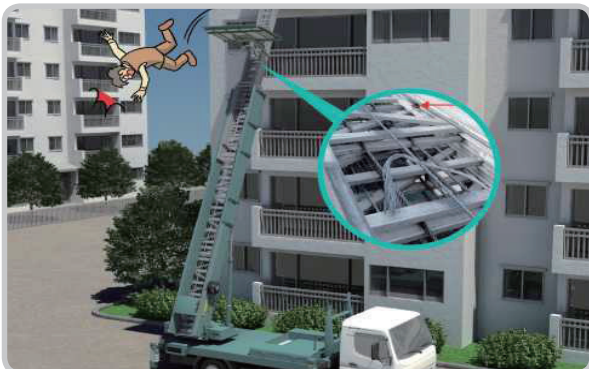
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사망 재해사례



▲ 운반구 탑승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짐



▲ 아웃트리거 철거 중 아웃트리거와 벽사이에 끼임



▲ 보조 와이어로프 풀림에 의한 충격으로 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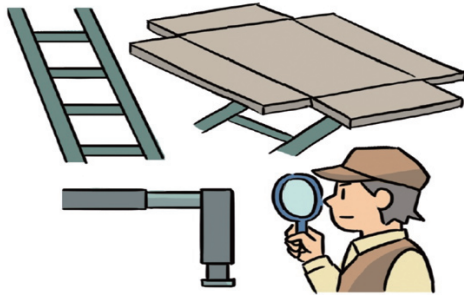


▲ 운반구에서 떨어진 이삿짐에 맞음

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

주요내용	벌금 또는 과태료
● 안전검사실시(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) - 안전검사는 도래되는 시기에 따라 반드시 실시	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● 탑승금지(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) -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금지 ● 방호장치의 조정(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) -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등 정상작동 ●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(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) - 아웃트리거 정상화 사용, 사다리 붐	5년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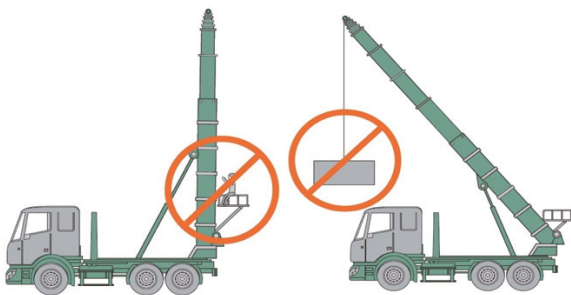
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수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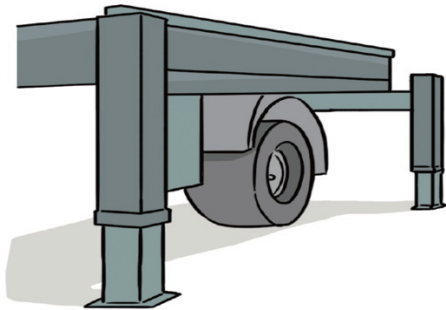
- 1 작업 전 차량의 사다리, 운반구, 아웃트리거 및 텐테이블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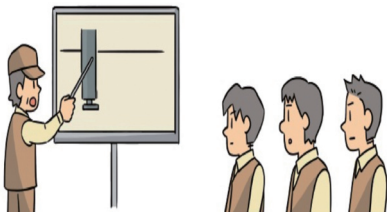
- 2 이삿짐 운반 작업 반경 내에는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


- 3 운반구에는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고, 허용하중 내에서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·사용 하여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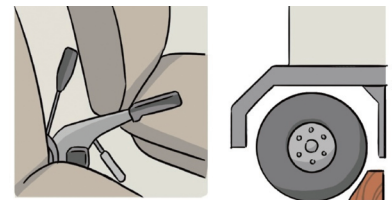
- 4 차량이 전복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 수평유지 및 침하방지 조치 등 정확히 설치하여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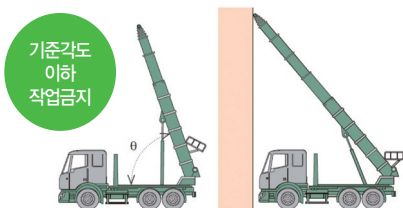
- 5 작업자에게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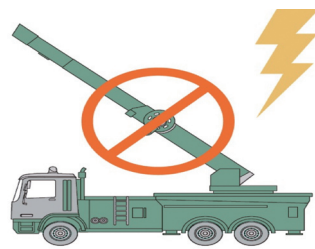
- 6 작업자는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화, 안전대)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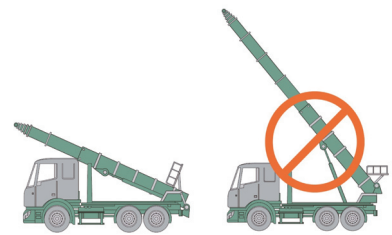
- 7 작업 중 항상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하고, 차량이 불시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임목 등으로 고정 하여야 합니다.



- 8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설계 기준 각도 이내로 건물 벽과 고정토록 설치하여야 합니다.



- 9 감전위험이 있거나 강풍(10m/sec 이상)이 부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 하여야 합니다.



- 10 작업 후에는 사다리 붐을 원위치 시키고 운반구를 고정된 후 차량을 운행하여야 합니다.

